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김 용 석 의원 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□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, 위원회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,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공공데이터 보호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

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

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